



1. 이제 악프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?

■ 병·의원을 이용하실 경우

- ① 접수 창구에서 접수를 합니다.
- ② 의사의 진찰을 받습니다.
- ③ 의사로부터 처방전 2부(약국제출용, 환자보관용 각 1부)를 발급 받습니다.
- ④ 처방전을 직접 약국에 갖고 가거나 단골약국에 FAX로 전송합니다.
- ⑤ 약국에 가서 약을 조제 받습니다.

◀32

■ 약국을 이용하실 경우

- ① 간단한 감기약, 소화제, 진통제 등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약(일반 의약품)은 현재와 같이 약국에서 사실 수 있습니다.
- ② 오·남용이 우려되는 항생제, 당뇨병약, 고혈압약, 신경통약 등(전문의약품)은 약국에서 직접 사실 수 없고 병·의원에서 의사의 처방전을 받으셔야 합니다.

2. 주사제도 반드시 병원 밖에서 사와야 하나요?

○ 그동안 우리는 불필요한 주사를 너무 많이 맞았습니다.

○ WHO가 권장하는 주사제 처방 빈도는 17.2%인데 반해 우리의 경우 56.6%로 이는 병·의원에 가는 환자 2명 중 한 명은 주사를 맞아 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.

○ 따라서 주사제의 오·남용을 막고자 주사제도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.

○ 다만 운반 및 보관상 차광이나 냉동·냉장이 필요한 주사제, 국민 불편을 감안하여 항암 주사제 등은 예외 주사제로 분류하여 병·의원에서 맞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○ 이에 따라 치료에 필요한 대부분의 주사제는 병·의원에서 직접 맞으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으실 겁니다.

3. 처방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처방전을 발급 받으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?

○ 처방전에는 질병 분류 기호(환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생략 가능),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, 의약품의 명칭, 처방전의 교부 연월일 및 사용 기간,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기재됩니다.

○ 지금까지 이 처방전은 환자를 거치지 않고 조제실로 직접 전달되어 환자는 단지 투약만을 받아 자신이 먹는 약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알 수 없었으나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이 처방전이 환자에게 직접 전달되어 환자의 알 권리가 보장됩니다.

4. 약국에서 계속 복용하던 약이 있는데, 이것도 이제 처방전을 받아야 하나요?

○ 복용하시던 의약품이 전문 의약품인 경우에는 병·의원에서 진찰을 받고 의사의 처방전을 받으셔야 합니다.

5. 의사 처방을 약국에서 조제하면 약이 없지니 않을까 또는 약을 잘못 조제하거나 않을까 불안할 것 같은데요?

○ 그렇지 않습니다. 우선 지역별로 의사·약사·보건소 등 행정기관 및 지역 인사가 참여하는 의약분업협력회의를 두어 의료 기관과 약국이 서로 상의하여 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갖추도록 하였습니

다.

○ 또한 시·군·구 약사회별로 “의약품 배송센터”를 지정하여 신속하게 약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○ 무엇보다도 약에 관한 전문가는 약사입니다. 전문가가 정확하고 꼼꼼하게 양질의 투약 복 약 설명을 해 주게 되므로 전혀 불안해하실 염려가 없습니다.

6. 약사가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전을 변경하여 조제하거나 처방전 없이 조제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?

○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과 달리 또는 처방전 없이 조제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됩니다. 약사법에 따라 1차 위반 시 자격정지 15일,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1월이며 3차 위반 시에는 약사 면허를 취소하게 됩니다.

7. 지금보다 의료비 부담이 증가되지 않을까요?

○ 병·의원과 약국에 각각 있지만 의료비는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.

① 의원을 이용하시는 경우 : 현재 의원에 가서 정액 부담으로 3,200원을 내시는 분은 앞으로도 부담의 차이가 없고 다만 이 금액을 의원(2,200원)과 약국(1,000원)에 나누어 내시면 됩니다.

② 종합병원을 이용하시는 경우 : 진찰료와 처방료는 종전과 똑같이 내시고 약값의 경우 종전에 전체 약값의 55%를 병원에 내시던 것을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전체 약값의 30%만 약국에 내시면 됩니다. 따라서 의료비가 절감됩니다.

8. 위급한 환자도 약을 타기 위해 병원과 약국을 번갈아 가야 합니까?

○ 아닙니다. 응급 환자, 입원 환자, 중증 장애인 등은 병·의원에서 직접 약을 줍니다.



9. 응급 환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?

○ 응급 환자는 「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“질병·분만·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 상황에서 즉시 필요한 응급 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 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”를 말합니다. ■

〈자료·보건복지부, 의약분업추진본부〉

※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

○ 신경학적 응급증상 : 급성 의식장애, 급성 신경학적 이상, 구토·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

○ 심 혈관계 응급증상 : 심폐 소생술이 필요한 증상, 급성 호흡 곤란, 심장 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, 심계항진, 박동 이상 및 쇼크, 중독 및 대사 장애 : 심한 탈수, 약물·알콜·기타 물질의 과다 복용·중독, 급성 대사 장애

○ 외과적 응급증상 :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 복증, 광범위한 화상, 관통상, 개방성·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주의 골절,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, 전신 마취 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, 다발성 외상

○ 출혈 : 계속되는 각혈, 지혈이 안 되는 출혈, 급성 위장관 출혈

○ 안과적 응급증상 : 화학 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, 급성 시력 소실

○ 알러지 :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

○ 소아과적 응급증상 : 소아 경련성 장애

○ 정신과적 응급증상 :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